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9. 12. 31.>

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납세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

신고내용			
세목			
법정신고기한		최초신고일	
수정신고사유			
수정신고대상 (과세물건)			

구분	과세표준	산출세액	가산세	비과/감면액	납부세액
종전신고					
수정신고					

추가납부세액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 임 장

위 납세자는 아래 "위임받은 자"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 (서명 또는 인)
위임받은 자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위임 받은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위임자와의 관계	
	주소			전화번호		

접수증(과세표준 수정신고)			
성 명		주 소	
구비서류 1.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)		접수인	
		접수일자	

유의사항
1.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2. 추가납부세액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종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